

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1349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6년 8월 12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」는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 조직으로,
- 나. 주민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을 도입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,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」의 운영사무를 위탁하고자 ‘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’ 및 ‘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’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사무 :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

나. 위탁개요

- 위탁기간 : 3년(2017~2019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(신규위탁)
- 소요예산(안) : 연5,200백만원

다. 주요 위탁내용

- 도시재생지역 공동체 기반조성 사업
 - 찾아가는 주민설명회 기획 및 운영
 -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행 및 지원
 - 중간지원조직, 전문가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·소통
 - 도시재생사업 홍보
-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전 준비단계 사업 지원
 - 희망지 사업 및 희망돋움 사업 공모 및 실행 지원
 - 희망지 등 유형별 주민 제안 검토 및 실행 지원
 - 주민공모사업 기획 및 운영
 -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을 위한 주민 상담·컨설팅

○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

- 주민공동체사업 실행 및 지원
- 도시재생 현장 분석, 지역자원조사 평가 및 활용
-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

○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사업 주민참여 실행

- 주민협의체 구성·운영 지원
-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주민참여방안 지원
- 지역재생협동조합, 지역개발센터 구성 및 운영
- 마을기업,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

라. 추진근거

- 2016년 도시재생 추진계획(시장방침 제6호, 2016.1.12.)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
-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, 제10조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마. 필요성

- 행정이 주도하는 현 도시재생사업의 경직된 절차와 한계를 벗어나 주민과 현장이 주도하고 행정은 지원하는 사업으로의 변화 필요
- 주민참여 유도를 위하여 주민과 현장에서 소통하고, 주민과 행정간 가교역할을 할 독립적인 중간지원조직 필요
-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필요
- 3+5근린재생사업 등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조기성과 달성 필요
- 쇠퇴노후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요구 증가로 도시재생활성화 지역 지정전, 희망지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필요에 따른 전문지원조직과 전문인력 필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

제11조(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)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1.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
2.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3.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
4.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
5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○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제9조(도시재생지원센터설치)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10조(도시재생지원센터의운영·위탁)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.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다.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
제4조(민간위탁사무의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나. 예산조치 : 2017년 예산 편성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※ 작성자 :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총괄팀 이주영(☎2133-1586)